## 청 원 군

우(360-706)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번지 / 전화(043)251-3189 / 전송(043)251-3619, 3620 종합민원처리과 과장 이 호 연 / 산업건축담당 이 광 창 / 담당자 이 성 규

문서번호 민원 58551 - 6/6/

시행일자 2002. 5. 30.

공개여부(부분공개)

수 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시화공단 2다 302

㈜아토 대표 문상영

					БО		 - 0	-''
선	4,			ス				
람				ᆜᄭ				
접	일	자						
	시	자 간		결				
수	번	호	-	재				-
처	리	과		- 공				
담	당	자		람				
심	사	자		수	님 사	일		

#### 제목 건축허가 통보(허가사항변경)

1. 민원 제5614호(2002.05.23)로 신청하신 청원군 오창면 각리 654-3, 654-4(오창과 학산업단지 17-3, 17-4B/L)상의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하고 통보하오니,

2. 허가에 따른 면허세 44,000원, 지역개발공채 190,000원을 납부·매입후 종합민원 처리과에서 허가서를 교부받으시고, 허가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건 축 허 가 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허가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 초	. 구 분	신축		허 :	허 가 일 자 20		002년 03월 04일		
				설계	설계변경일자 2002년		<sup>년 05월 30일 ( 1차)</sup>		
허 기	번 호	2002 -	- 종합민원처리과 - 신북	특허가 -	31				
건 축 주 (주)아토			토 대표이사 문상영	주민:	124311-0033235				
대지	위 치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54-3 외1 필지						
대지민	변적(m <sup>*</sup> )		20,837.50						
건 축 물 명 칭 오창가			스공장	주	용도	공장			
건축면적(㎡)			3,129.15	건 j	건 폐 율(%)		15.02		
연 면 적(m²)			4,409.53	용 2	용 적 률(%)		21.16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동번호 동명칭및번호		및번호	연면적(㎡)/(지하/지상)	동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지하/지상)		
1	1 가동		1,965.20/(0/1)	2	나동		1,667.66/(0/3)		
3	다동		67.43/(0/1)	4	라동		326.37/(0/1)		
5	마동		122.00/(0/1)	6	바동		178.47/(0/5)		
7	사동		82.40/(0/5)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10동 이상일 경우에는 뒷면에 계속 됩니다.

2002 년 05 월 30 일

청 원 군 수



### 관련지번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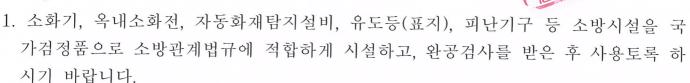
관련지번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54-4



## 변 경 허 가(협 의) 조 건

#### <소방>



- 2.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다시 받으 시기 바랍니다.
- 3.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법이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4. 본 건축물은 소방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니 붙임 청주소방서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1. 내화구조에 대하여는 건축법령 및 건설교통부고시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에 적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2.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장의 토지사용승락조건 및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과 체결한 입주계약 내용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3. 기타 기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 1. 대상토지표시

. 소	재 지	오창과학산업단지(오창			항면)	지 번	각리654-4 (17-3B/L)		
지	목	장	분양면적		11,325	5.5m²	사용승낙면적	11,325.5m²	
토지의	의 용도	공장용지			사 용 용 도		인·허가 및 공사착공용		

#### 2. 토지사용신청자(분양받은 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식회사 아토 대표 문 상 영	124311-003323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시화공단 2다 302호

#### 3. 토지사용승낙조건

- ① 토지사용신청자는 붙임'토지 사용승낙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청자는 공사착공전 한국토지공사 오창사업단 개발부에 착공사실을 알리고 토지의 경계확인 및 기반시설 연결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착공하여야 합니다.
- ③ 입주계약,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제반사항과 청원군 건축조례 및 기타 행정지도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1.토지사용승낙 조건 1부.

2.지적평면도 1부.

2002년 05월 24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장



### 토지 사용승낙 조건

- 1.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사항과 오창과학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건축착공시에는 건축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착공사실을 한국토지공사(개발부)에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여 한국토지공사(개발부)의 경계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이행확인점검을 한국토지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3. 건축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4. 공장건축시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환경 및 하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자재 적치장 또는 가설 사무실 등이 필요하여 당해 토지 이외의 토지사용 또는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개발부)와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한후에 사용하고 무단, 불법점용 또는 불법사용하면 안되며 건축시 작업 공간으로 사용한 곳의 가건물, 콘테이너박스,(폐)자재, 쓰레기, 토석등은 전량 반출 시킨후, 평탄작업을 하고 쓰레기의 적법처리된 결과를 증빙서류로 건축준공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건축공사 지하터파기시 도로 및 지하매설물의 확인과 보호를 하여야 하며 토류벽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한국토지공사 (개발부)와 별도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 7. 한국토지공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라, 공해관리, 환경관리등 신청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흡수 있는다 신청인은 동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8. 당해토지에 박혀있는 필계말목은 지적확정측량을 위한 말목으로 경계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시 대한지적공사 충북지사 청원군출장소 에 별도의 경계확인측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9. 목적용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건축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0.신청인은 공장건축 등에 따른 최종 토공계획고 및 배수처리등은 한국토지공사가 설계해서 공사시행한 설계도서등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11.신청인은 기타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서의 제반 조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 내 문

<u>(주)아토 대표이사 문상영 귀하</u> (시흥시 정왕동 1263-1 시화공단 2다 302)

귀하께서 금번에 허가 신청하신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17-4외 1필지상의 아토 공장 건축물은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방감리 대상으로 소방감 리자를 선임한 후 소방시설 공사를 착공하시기 바라며,

소방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2급 방화관리대상에 해당되니 아래 사람 중 1 인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주소방서 방호구조과에 신고하시고,

소방법규(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사용할 경우 소방서 장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방화관리자 자격

#### 1.1급 방화관리자

가.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나.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2급 방화관리자

가.산업안전기사·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자 또는 가스관계안전관리 책임 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한함)

나.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다.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협회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 안내 : (043) 254-4119

라.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마.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바.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1급 방화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

위 사항과 관련한 문의전화

: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허가 - 청주소방서 민원실 (043) 256-0119

# 청주소방서